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2013년 6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최 남 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 개혁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시 전문가격사 간의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금융지원제도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양성 및 변호사의 해외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법률서비스 산업, 시장개방,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수출확대, 해외직접투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nchoi@keri.org)

** 본 논문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보고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정책연구 2012-12의 제 4장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분석결과와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하다.

접수일: 5/10, 게재확정일: 6/18

I. 서론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후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과 국내 로스쿨 제도 실행이 맞물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업거래, 자금조달, M&A, 국제중재, 분쟁해결부문 등에서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인력의 급격한 공급증가를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의 계기로 활용할 경우,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신규서비스 시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로펌의 경쟁력제고, 유망해외진출기업과의 연계 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한국 변호사의 해외고용 및 국제수준의 변호사양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증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의 법률서비스 수출자료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자료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산업의 개혁이 실현될 경우 2011년 기준 법률서비스의 수출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2012~2020년 사이 법률서비스 빅뱅으로 인한 장단기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에서는 법률분야의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논쟁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김두얼·이시욱(2010)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직역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축소하고, 최소자격을 갖춘 이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험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진입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자격사에 대한 징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자격사 단체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임의단체 화해서 단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법률서비스 산업에서 국내로펌의 해외진출확대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수준에서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과 기업수준에서 한국 로펌의 경영전략을 통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수출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점이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대해 국내 로펌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 및 싱가포르 법률서비스 산업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법률서비스 산업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실현되어 해외법률서비스 수출확대가 이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법률서비스 수출자료와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연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될 경우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은 2020년까지 약 3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약 4만 3천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 개혁에 따른 수출확대는 전체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로 약 3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Ⅲ장에서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실현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기타 논의를 도출한다.

Ⅱ. 법률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법률서비스 산업 현황

이번 절에서는 법률서비스의 해외교역규모와 시장개방,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 및 변호사 공급 확대추세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6년 이후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입 추세를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던 2009년에 법률서비스 수출이 -18.4%로 급감한 것을 제외하고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액은 최소 9.2%에서 최대 21.8%로 줄곧 양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또한 2007~2011년 사이 평균 법률서비스 수출증가율은 약 8.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기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5.8억 달러와 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9~2011년 사이 연평균 대략 5억 달러 규모의 법률서비스 무역적자가 지속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취약한 대외경쟁력을 보여준다.

<표 1> 법률서비스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항목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6-2011 평균
법률서비스 수입	470.2	572.8	658.9	537.8	587.4	680.9	584.7
증가율(%)		21.8	15.0	-18.4	9.2	15.9	8.7
법률서비스 지급	697.4	703.5	858.0	1,017.4	1,060.8	1,183.6	920.1

주: 법률서비스수입증가율의 연평균은 2007~2011년 5년 평균임.

자료: KOSIS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확대와 더불어 법률서비스 산업이 개방되고 있으므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제도개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현재는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자국법과 국제법 및 제3국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년 후에 2단계로 개방되면 국내 로펌과 해외로펌의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이전까지 국내에 진출한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 로펌들을 통해 한국법률 자문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2단계가 실행되면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사무소와의 업무제휴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한국법률자문을 수임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입지가 크게 확대된다.

5년 후에 법률시장이 3단계로 개방되면 외국 로펌의 한국로펌과의 동업 및 한국 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일반 시민도 외국로펌에 소속된 한국 변호사를 통해 국내 소송업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에도 법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법을 통한 분쟁해결방식도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수도 늘고 전통적인 법조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변호사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법률서비스 공급자도 다변화되고 법률가 집단의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008년 이후 2009년에 소폭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여서 2010년 매출액은 4조 3,780억 원을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수는 약 14만 6천개에 달한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에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3.2%로서 전년대비 2.5%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의 2010년 증가율은 6.8%로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주목할

<표 2> 법률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명, 억 원, %)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법무관련 서비스업	10,836	10,877 (0.4)	11,093 (2.0)	59,398	59,793 (0.7)	61,703 (3.2)	45,232	45,629 (0.9)	43,780 (-4.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14	8,719 (3.6)	9,224 (5.8)	58,609	60,928 (4.0)	65,101 (6.8)	39,770	41,275 (3.8)	41,230 (-0.1)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637	2,768 (5.0)		26,754	25,789 (-3.6)		30,341	39,651 (30.7)	

자료: 2008-2009년 자료는 통계청, “2009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 2010년 12월 27일자 보도자료 참조.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010년 자료는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통계표,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2012년 4월 27일자 보도자료 참조.

1) 법률서비스 산업은 법무관련 서비스업(변호사업, 약 2만 7천; 변리사업, 약 7천; 법무사업, 약 2만 2천), 회계 사업과 세무사업, 그리고 기업법무서비스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기준임.

만한 사실은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법률서비스 산업에서 전년대비 사업체 수와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국내 10대 주요 로펌별 매출, 총자산, 일자리 및 영업이익률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한국의 최대 로펌이다. 김앤장의 2006년말 총매출액은 약 3,790억 원이며 일자리 수는 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일반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약 2,473개이다²⁾.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표 3> 한국의 10대 로펌 현황

(단위: 천 원, 명, 개, %)

	결산 년도	매출액	총자산	종업원 현황	일자리*	변호사**	영업 이익률
김앤장 법률 사무소	2006	378,976,000	372,301,000		2,473	553***	
	2005	344,524,000	350,204,000				
	2004	417,604,000	303,161,000				
광장	2004			300	517	301	
(유)태평양	2005	74,478,000	43,783,000		680	306	9.99
	2004	67,489,000	38,496,000				9.19
	2003	61,503,196	34,900,773	345			
세종					500	259	
(유)울촌	2005	34,710,424	12,957,949		500	210	
	2004	30,428,762	11,000,543				
(유)화우	2008	75,477,246	40,994,983	400	349	210	6.16
	2007	63,159,996	29,416,844				6.38
	2006	51,547,787	20,295,775				5.19
바른	2010	70,629,271	29,178,175			132	3.26
	2009	53,997,832	26,071,495	215			1.38
	2008	56,074,769	24,439,455	114	250		2.5
(유)로고스					200	107	
충정	2008	28,513,894	9,962,225	95		95	8.7
	2007	31,124,902	12,933,558				14.73
	2003	16,453,000	6,040,000				
지평지성					300	103	

주: *김앤장, 광장, 화우의 직원 수는 고용노동부, 그 밖의 법무법인은 잡코리아, 사람인 웹사이트를 참조. 일자리 수는 2011년 12월말 기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를 비롯한 모든 상시근로자의 수를 사용함.

** 변호사 수는 2012년 7월 기준 대한변협자료 참고. 변호사 수는 외국변호사 포함.

***김앤장의 전문자격사(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대략 800여명으로 추정.

자료: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KISLINE 참조.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총매출액은 약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수와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글로벌 100대 로펌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국내 10대 주요 로펌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대 후반까지 1,000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의 일인당 매출액은 2000년대 중반에 대략 2억 원 정도였다. 최근 인베스트조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서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

〈표 4〉 한국 변호사 현황(2012년 기준)

(단위: 명, 개, %)

지방회	변호사							
	개인회원	준회원	소계	로펌변호사			로펌	
				변호사수	지역별 구성	전체변호사 비중	사업체수	지역별 구성
서울	8,516	1,823	10,339	5,671	80.1%	40.3%	471	62.6%
경기북부	231	22	253	94	1.3%	0.7%	28	3.7%
인천	343	28	371	179	2.5%	1.3%	33	4.4%
경기중앙	605	64	669	333	4.7%	2.4%	59	7.8%
강원	91	19	110	14	0.2%	0.1%	3	0.4%
충북	102	25	127	53	0.7%	0.4%	10	1.3%
대전	305	48	353	113	1.6%	0.8%	26	3.5%
대구	386	55	441	142	2.0%	1.0%	30	4.0%
부산	415	109	524	221	3.1%	1.6%	35	4.7%
울산	115	16	131	48	0.7%	0.3%	9	1.2%
경남	184	28	212	67	0.9%	0.5%	15	2.0%
광주	257	55	312	103	1.5%	0.7%	23	3.1%
전북	135	28	163	34	0.5%	0.2%	6	0.8%
제주	40	10	50	10	0.1%	0.1%	4	0.5%
합	11,725	2,330	14,055	7,082	100.0%	50.4%	752	100.0%

주: 로펌사업체(변호사) 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공증인가 합동, 공동법률사무소(변호사)의 총합.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12년 6월 30일 기준

2) 고용노동부(2012), “2012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참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³⁾ 국내 상위 10대 로펌의 경우 변호사 일인당 매출액도 대략 5억 원 안팎을 기록하였다.

2012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4,055명이다. 로펌변호사의 비중은 약 50%이며, 로펌변호사 중 약 80%는 서울소재 로펌에 재직하고 있다. 또한 서울소재 로펌변호사의 전체변호사 비중은 약 40%에 해당한다.

국내 중대형 로펌의 해외진출은 중국, 동남아, 남미, 러시아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15개국에 35개 현지사무소 및 102개의 해외현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진출은 2002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중국 상해 현지법률사무소 개설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륙아주, 로고스, 지평지성, 율촌,

<표 5>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및 현지 일자리 현황(2012년 기준)

로펌	진출 국가(도시, 한국·외국 변호사 및 직원 수)	분사무소 개수	일자리 현황
광장	중국(북경, 5)	1개	5
대륙아주	중국(상해,1), 러시아(블라디보스톡 1, 모스크바 1),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1), 오스트리아(비엔나, 1)	6개	5
로고스	베트남(호치민 4, 하노이 4)	2개	8
세종	중국(북경 4, 상해 2), 독일(뮌헨, 2)	3개	8
에이펙스	베트남(호치민 1), 캄보디아(프놈펜 4),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인도네시아(자카르타, 5)	3개	10
영진	미국(뉴욕, 1)	1개	1
율촌	중국(북경,5), 베트남(호치민 4, 하노이 4)	3개	13
정평	중국(북경, 1), 베트남(호치민 7, 하노이 5), 몽골(울란바토르), 일본(도쿄)	5개	13
지평지성	중국(상해, 6), 베트남(호치민 4, 하노이 3), 캄보디아(프놈펜 2), 라오스(비엔티엔, 1), 태국(방콕, 1), 미얀마(양곤, 1)	7개	18
태평양	중국(북경 5, 상해 7)	2개	12
화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6), 일본(도쿄, 3)	2개	9
합계	15개국	35개	102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과 자료 참조. 2012. 5. 17. 기준

3) 인베스트조선, “김앤장, 작년 3,000억 벌었다..1인당 생산성 ‘율촌’ 최고”, 2012. 3. 12.일자.

화우, 에이펙스, 영진, 정평, 태평양, 광장, 세종 등 중대형 로펌의 동남아 등 현지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서비스 산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변호사 인력공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수는 2012년 약 2,000여 명의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법률시장 진입으로 인해 1년 만에 약 1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변호사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변호사 공급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하였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모두 대략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8월 현재 전국 21개 로스쿨 졸업생 1,441명 중 취업자는 1,178명으로 평균 취업률은 약 81.7%로 나타났다⁴⁾.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펌(약 51%)과 기업체(약 17%)로의 취직이 70%수준을 기록하였다.⁵⁾ 반면에 법원·검찰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직하는 경우는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70%)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44%) 모두 대략 절반 이상이 로펌과 기업체로 진출하였다.

<표 6> 로스쿨 취업률 현황(2012년 8월 기준)

(단위: 명, %)

시·도	인가대학	졸업자(입학정원)	취업자	로펌 취업자	취업률
13개 광역단체	25개 대학	1,441(1,740)	1,178	601	81.7

주: 각 로스쿨이 8월 2-31일 교과부에 직접 제출한 자료.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건국·아주·영남·이화여대는 자료 미제출.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생은 미취업자로 처리.

자료: 과학기술부·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중앙일보 보도자료 재인용.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⁶⁾.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남아 10개 국가 연합체인 ASEAN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2010~201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아세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4) 중앙일보, “로스쿨 1기 어디 취직했나 보니”, 2012. 9. 14.일자.

5) 또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준법지원인 제도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한다. 준법지원인 제도도입은 변호사의 기업체진출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팀, 『2011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12. 3. 참조.

두번째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2009년 사이에 대ASEAN 해외직접투자액은 연평균 22억 달러였으나 2010~2011년 사이 44.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대ASEAN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총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2009년에 12.3%에서 2011년에는 17.9%로 5.6% 포인트 증가하여서 미국(18.5%) 다음으로 EU(17.2%)와 중국(14.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개발과 현지 내수시장 개척을 목적으로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7> 한국의 신흥국가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1	
ASEAN	한국→ASEAN	금액	268,957	463,824	496,763	2,196,898	4,450,759
		비중	17.79%	12.45%	9.81%	12.33%	17.86%
	ASEAN→한국	금액	12,193	1,089,507	850,320	699,872	1,188,669
		비중	1.12%	14.90%	7.74%	6.19%	8.89%
	수지		-256,765	625,683	353,557	-1,497,026	-3,262,09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서비스 수출확대의 문제점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현황에 근거해볼 때 법률서비스 산업은 낮은 글로벌 경쟁력, 저열한 생산성, 국내로펌의 영세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 부족,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가 주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

국내 로펌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은 외국로펌에 비해 매우 낮다⁷⁾. 이는 법률서비스 부

7) 최남석, “한·미 FTA 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KERI column 2012. 4. 23,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문에 나타난 2009~2011년 연평균 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자문과 소송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개방과 경쟁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투자, 자금조달, 인수합병, 기업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법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로펌보다는 해외현지 법무서비스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해외로펌에게 의존해 왔다. 반면에 국내 소송부문에서는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한국법에 근거해서 국내 법원에서 소송하고 변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송무 부문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주요 국내로펌들은 외국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법률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법률서비스 부문은 국제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국내 송무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질 높은 고객센터를 제공하는 면에서 국내로펌의 법률서비스는 외국로펌의 고객중심 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2) 법률서비스 산업의 저열한 생산성

2010년 기준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각각 2.0%와 3.2%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4.2% 감소하였다. 이는 법률서비스업에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내 법률시장에서 법무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또는 사업체의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2010년의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 일인당 매출액은 약 7천 1백만 원으로 2009년 7천 6백만 원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또한 법무관련 사업체당 매출액도 2010년 3.9억 원으로 2009년 4.2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국내 법률시장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⁸⁾.

8) 그러나 법률서비스의 생산성 하락은 시장 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 아울러 과거 높은 진입규제로 인해 1인당 매출액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법률 인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시장 정상화의 과정일 수도 있다.

(3) 국내 로펌의 영세성

우리나라 로펌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에 위치한 로펌변호사 수가 전체 변호사 수의 약 40%에 이른다. 국내 50대 로펌의 변호사 수는 최소 16명에서 최대 553명 사이로 상위 50대 로펌의 평균 변호사 수는 약 71명 정도이다⁹⁾. 한편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을 제외한 국내 5대 로펌의 매출액이 2011년에 처음으로 약 1,000억 원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변호사 일인당 매출액도 대략 5억 원 안팎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100대 로펌의 변호사 수가 평균 1,000명이고 평균 매출액이 약 8억 달러인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 로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하다.¹⁰⁾ 문제는 법률시장 개방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영미계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규모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총 752개의 로펌중에서 로펌의 형태를 갖추고 복잡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해 비교적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은 최대 50여개 정도이다. 현재 전문화, 조직화, 대형화 측면에서 대외경쟁에 대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한국의 로펌은 상위 10여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 양성의 어려움

해외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현지 법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영어로 법률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영미법식 준거법에 능통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 변호사는 국제기업거래 자문 분야에서는 미국변호사에 비해 영어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의 경우에도 경쟁력이 뒤진다. 변호사의 국제적 역량이 곧 로펌의 자산인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한국기업관련 대형국제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대형로펌이 해외메이저 로펌에게 수입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로펌은 국내출신으로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보다는 해외 주요로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한국인 변호사를 외국변호사(Foreign Legal Consultant)로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주요로펌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이 편익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출신 변호사의 국제적 역량이 낮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9) 대한변협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함. 2012년 8월 현재 상위 20위 로펌의 경우는 외국변호사 수를 포함.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50개 로펌에 재직중인 변호사의 수는 총 3,547명임.

10) 매일경제, “글로벌 100대 로펌은 변호사 평균 1,000명…매출 8억 달러”, 2012. 7. 17.일자.

(5) 대형로펌의 해외진출 지연과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 영세성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소는 현재 해외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현지 진출이나 현지판매에 관련된 분쟁 등이 일어날 때 현지의 가장 유력한 로펌에게 법률서비스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송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해외현지에서 기업활동관련 송사에 관해서는 자문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 대기업을 해외특정국가에서 외국현지기업과 송사에 휘말릴 경우 한국 대형로펌이 해당국가의 유력한 현지로펌과 경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2위경쟁 관계에 있는 태평양, 광장은 해외사무소가 중국에만 있고 세종은 중국과 독일에만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남미 등에 적극적으로 해외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로펌들은 5위에서 15위사이의 중소형 로펌들이 대부분이다.

중소형 로펌들의 해외진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형로펌들이 해외현지진출을 미루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수출이 확대되지 않고 정체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많은 중소형 로펌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려 하지만 현지진출이 실패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매우 높아 해외진출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대형로펌이 선제적으로 아시아시장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개척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 로펌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지만 현지에는 대부분 2~3인 정도가 상주하고 한국본사에서 현지법률사무소의 경영 및 주요 법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해외현지 분사무소의 영세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대형로펌 역시 국내 시장의 수익창출 가능성과 비교해 볼 때 해외진출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확실한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¹¹⁾. 또한 법률시장 개방 후 외국대형로펌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내법률시장에서의 선두자리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인 면도 있다.

11) 국내 법률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압력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로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메커니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6)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

지금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법률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정책은 부재하다. 현재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검토중인 대표적인 정책은 법률·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회계·특허 등 전문서비스의 윈스탑 토탈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¹²⁾. 윈스탑 토탈 서비스 제공체계는 2012년 3/4분기에 구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전문자격사 동업제도 도입은 현재 법무부와 대한변협에서 논의중인 상태로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과의 동업이 금지되어 있다.¹³⁾ 윈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윈스탑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향후 변호사의 전문직종 간 동업을 허용함으로써 로펌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관련 자문은 복잡한 전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특허출원, 조세, M&A 등의 부문에서 전문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지만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통한 법무서비스가 요구된다. 전문자격사 동업제도가 허용될 경우 법률서비스 소비자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통합된 전문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¹⁴⁾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문자격사와 동업이 허용될 경우 각 해당분야별 전문서비스를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로펌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법조계는 변호사시장이 잠식당할 우려와 법조윤리변

12) 기획재정부,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 2. 22. 참조.

13)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참조.

14) 정부의 전문서비스의 윈스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법조인접 자격사의 동업 허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찬성측은 변호사와 법조인접 전문가와 동업을 허용하여 윈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함. 법무 및 인접 전문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수 있음. 이미 독일, 호주, 영국은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등 법조인접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을 허용함. 동업반대측은 변호사 직업의 공공성과 존엄성과 같은 법조윤리가 침해되고, 변호사 일자리를 줄어들며 변호사 경쟁이 치열해질수 있음을 강조함. 현재 법무부와 대한변협에서 논의중인 동업허용(안)의 주요내용은 “(1) (회계사를 제외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와 동업 허용 (2) 동업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지분을 3분의 2 이상 보장”임. 인터넷 법률신문, “[찬반토론]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 찬성 vs. 반대”, 2012년 4월 2일 참조.

질 우려를 비롯해서 법무, 특허, 세무, 회계법인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전문자격사 동업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III.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이번 절에서는 법률서비스 산업에서 국내로펌의 해외진출확대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과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한국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국내로펌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 및 유망 해외진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방안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 양성 및 한국 변호사의 해외 고용 증진을 위해 개혁해야할 규제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 법률서비스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신규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창출되는 것을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이란 외국인 직접투자(Inbound FDI)와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 확대와 더불어 한국 로펌이 법률서비스를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기업과 해외현지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외국기업의 국내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송무 부문에서 법률서비스 수요를 한국 로펌이 충족시킬 경우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현지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1.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외국기업에게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에게 법률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로펌의 전문화, 조직화, 대형화가 이뤄져야 한다.

(1) Inbound 자문 분야: 한국문화 및 법체계에 대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첫째, 한국로펌은 국내 기업자문 및 송무분야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특유의 문화와 법체계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외국로펌과는 차별되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로펌이 한국주재 외국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 금융자금조달,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조세 등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한국 로펌이 국내주재 외국기업에게 제공해 왔다. 그동안 대체로 국내로펌은 외국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해외로펌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해외로펌의 국내 법률사무소 개설이 허용되면서 글로벌 메이저 로펌과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일반, 금융조달, 지적권, 국제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외국로펌과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로펌은 한국문화와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제도 및 기업경영환경에 관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외국로펌과는 차별화해서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한국로펌은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법률서비스 수요를 로펌의 전문화와 조직화를 통해 선점해야 한다. 일례로, 대형할인마트의 휴일영업제한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와 강남구 간에 행정규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외국계 서비스기업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령·제도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규제적용 상의 분쟁발생시 중재 및 소송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송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한국 서비스/투자/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 규제 및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선하도록 실행하는 과정에서 로펌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생가능한 특허분쟁,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분야에서 역시 국내로펌이 외국로펌과 경쟁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유지해야 한다.

(2) Outbound 자문분야: 주니어 변호사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해외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활용

최근 한국기업들은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미지역 등 신흥경제권으로 기업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경영 및 관리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및 기업거래 활동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로펌들이 해외 현지로펌과 차별성을 가지고 한국 기업의 해외현지투자 및 영업활동(Outbound FDI)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요구된다.

첫째, 로펌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주니어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로펌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교육시키고 해외연수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012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51%가 로펌에 취직하였는데 이들은 맞춤형 인재로서 비교적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로펌에 입사한 주니어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력과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법조경험과 인적자원을 축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는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의사, 약사 경력을 소유한 경우가 상당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로펌이 다양한 출신과 전공을 기초로한 광범위한 인력풀을 형성하여 로펌의 전문화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인력공급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펌내에서 협동작업을 통해 통합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의 복잡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로펌의 전문화를 기반으로 로펌이 대형화되기 위해서는 영미계 대형 로펌들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방안도 활용해야 한다.¹⁵⁾ 현재 세계 법률시장에서 100대 글로벌 로펌은 미국(78%)과 영국로펌(12%)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미계 로펌들은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부문에서 세계 주요 투자대상국들에 대한 인수합병, 금융자본조달, 기업일반, 지식재산권, 공정거래·중재 업무에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15) 김갑유(2007),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한국 로펌의 생존전략”,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참조.

로펌은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 주요 로펌이 이미 구축해 놓은 범조인프라를 전략적 업무제휴 및 합작투자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로펌과의 제휴관계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한국 중소형 로펌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외국로펌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함으로써 로펌의 대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¹⁶⁾

셋째, 전문화·조직화를 수반하지 않는 대형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 내적으로는 소속변호사의 업무역량 평가제도를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는 소속변호사의 국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내 로펌 간의 순위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뒤지는 변호사들을 영입하여 로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규모는 늘어나지만 변호사의 개별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진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속변호사들에게 낮은 수임료를 책정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로펌전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로펌 내적으로는 변호사의 개별역량 확충을 장려하고 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로펌전체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쌓도록해서 로펌의 대형화가 조직화 및 전문화와 병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 및 유망 해외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

한국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개혁하고 법률서비스 수출진흥에 요구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 유인을 위한 규제개혁 및 수출보험제도 확립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형 로펌에 한해서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와 동업을 허용해야 한다. 해외진출시 전문가자격사의 동업이 허용되면 국내 중소로펌들은 범조인접 전문가자격사와 동업을 통해 해

16) 이국운(2007),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고슴도치와 여우-법률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재구성에 대한 단상”,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참조

외현지진출시 선결되어야 할 로펌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현지 기업활동은 기업의 현지진출 및 투자에서 현지생산 및 판매를 포함하여 제3세계 또는 본국으로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일반 업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 자본조달, 인수합병, 공정거래, 조세, 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분쟁, 국제거래 및 분쟁해결 등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법률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로펌은 M&A, 조세, 특허, 노동분쟁해결, 국제거래 등을 위해 모두 통합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전문성과 대형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인수합병, 자본조달 부문에서는 회계사, 조세 부문은 세무사,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변리사, 국제거래 부문에서는 관세사 등의 각 분야 전문가격사와 동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외현지진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로펌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로펌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조인접 전문가격사와의 동업을 허용한다면 중소기업 로펌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세무·지적재산권·관세 등 인접서비스업의 해외인프라 및 축적된 경험을 통합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지에 파견된 법조인접 서비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다양한 전문성과 포괄적인 현지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한국기업 임직원의 퇴직 또는 은퇴시 경영컨설턴트로 직종을 전환한 후 중소기업 로펌에서 이들을 현지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령,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현지에 상주하는 임직원은 현지기업활동에 관해 다양한 경력과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은퇴하거나 퇴직할 경우, 현지시장에 대한 축적된 인적자원은 사장될 수 있으며 퇴직 후 귀국하여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컨설턴트로 직종을 전환한 현지 전문가들을 해외현지 중소기업 로펌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중소기업 로펌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남미 등으로 현지진출하려는 신규기업에게 차별성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기 은퇴 후에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식기반 숙련근로자들이 자신의 현지경력과 전공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법률서비스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로펌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해외현지법률사무소 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를 조성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형 로펌의 해외현지진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지법률사무소의 영세성이다.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해외 신흥시장 개척에 따른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현지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최소인원으로 현지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형 로펌에게도 서비스수출종합보험을 지원해야 한다. 가령, K-sure의 서비스수출종합보험을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시에 지원함으로써 중소형 로펌이 해외진출에 실패할 경우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주어야 한다.¹⁷⁾ 다른 한편으로는 로펌의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를 신설하고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¹⁸⁾ 국내로펌의 해외현지법률사무소 설립 및 법률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현지투자액의 30%까지 총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진출로펌이 해외현지법률사무소에 대한 투자액의 30%까지 해외투자 준비금으로 5년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중소형 로펌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현지의 한국인 현지변호사나 해외동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와 합작 및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인 또는 해외거주동포가 많으므로 이들 한국계 변호사와 협력할 경우 그들의 법률서비스 비즈니스 경험과 현지시장에 대한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해당 국가의 법률시장 개방 일정에 따라 자국법 및 언어에 능통한 현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고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과 중소형 로펌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 로펌으로부터 해외현지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외투자금융지원 및 세계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중소형 로펌이 해외현지에 진출할 경우 중소형 로펌에게 해외진출 소요자금 총액의 90%까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받도록 금

17) 정부는 서비스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에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K-sure 서비스종합보험 지원제도는 운송, 의료, MICE, 문화관광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었다. 지식경제부, 『지경부,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한다』, 2011. 4. 6.일자 보도자료 참조.

18)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92조에 의거해 시행되다가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면개정시 폐지되었다.

융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¹⁹⁾. 또한 해외현지에서 한국로펌-한국기업 간 법률서비스 거래 시 한국로펌과 한국기업에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높여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해주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이와 동시에 외국 현지에서 한국기업-한국로펌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높여주어서 한국기업-한국로펌 간 법률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시 한국로펌이 현지투자 및 업무계약체결에 동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한국로펌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해외법무 수행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해외기업을 M&A하는 경우 또는 국제거래체결 및 국제소송 제기 시 한국기업이 한국로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외국로펌이 한국기업의 국제소송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한국로펌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외국로펌이 주도로 하는 국제거래 및 소송에서 한국로펌이 동참하는 경우에도 사실 한국로펌과 해외로펌이 맡는 역할은 다르다. 한국기업은 한국로펌을 통해서 외국로펌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국로펌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한국기업이 의뢰한 법률전문가에 의해 평가받으므로 터무니없는 수입료를 함부로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증거제공 및 의견교환이 잘 이뤄지고, 송무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높아지므로 한국기업과 한국로펌, 외국로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및 한국 기업들이 해외프로젝트 추진 시 외국로펌에게 직접 의뢰하는 것보다 한국로펌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주도하게 할 경우가 효율적일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일반 국제계약법적 요소가 80%이고 현지 로컬 요소는 20% 정도이다. 그런데 외국 메이저 로펌도 현지 로컬 요소의 상당부분을 현지 로펌과 연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의 현지요소에 대해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는 면에서는 한국로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외국로펌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한국기업문화를 이해하는 한국변호사들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주도하도록 할 경우 업무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19)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요자금의 80%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90% 이하, 자원개발의 경우 90% 범위내에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융지원은 제조업 위주로 실행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해외투자정보 FAQ 참조.

일곱째, 한국로펌과 글로벌 법조전문가 그룹 및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커넥션을 늘려가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KOTRA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에서 한국 중소형 로펌이 글로벌 법조전문가 및 중국기업들과 커넥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국로펌에 대한 해외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다²⁰. 향후에도 한국로펌의 해외홍보설명회와 법조국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필요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로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로펌의 해외법률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국제중재센터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유럽·아시아·북미를 연결하는 글로벌통상 및 투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국제법조기관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1월에는 인천 송도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AL)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송도 UNCITAL 아태지부는 아·태지역 국제거래 규범체계 확립의 구심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와 같은 국제법조계 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로펌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한국법률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구축해 가야 한다.

여덟째, 우리나라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법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공통의 문화적 가치 및 시민법 전통을 기초로 공통의 상법전, 국제계약법전, 국제투자법전 등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법의 통합은 향후 역내외 거래에 있어서 영미계 준거법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역내외 로펌들이 참조해야 하는 법원(法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한 대형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국내 대형로펌들은 법률서비스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법률서비스수출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메가로펌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시장판도가 변화할 것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현지 법률시장으로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현지법률사무

20) 중앙일보, “법무부, 중국서 국내로펌 합동 해외 홍보설명회 개최”, 2012. 5. 9.

소를 개설해야 한다. 가령, 대형로펌은 현지법률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신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에게 현지경험에 기반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목표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국과의 FTA와 관련하여 인수합병,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부문들에서 신규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대형로펌들이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대형 법률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잠재 고객층을 한국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영미계 다국적 기업과 해외현지 로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문에 관한 법률서비스 수요확보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글로벌 우량자산과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²¹⁾. 한국 대형로펌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 사학연금공단, 한국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한국기관투자자들을 잠재 클라이언트로 확보하여서 한국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관광·교육·문화·법률서비스 융합수출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비스의 연계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외국인학교 설립투자 및 운영, 콘텐츠수출 특허·저작권 부문에서 법률자문 및 송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간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투자자유구역 및 서비스 융합수출진흥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의료·교육·컨텐츠 서비스의 해외수출진흥과 관련된 규제개혁·법제도개선·해외진출자문을 전담하기 위한 TF를 영어로 수월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해야 한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이 법률서비스를 아시아권으로 확장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 융합수출에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융합수출진흥기금을 설립하고 법률·의료·교육·컨텐츠 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융합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²²⁾.

21) 매일경제, “연기금 ‘대체투자 60조로 확대’…KIC ‘자산 30% 해외자원 투자’”, 2012. 9. 25

22)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특정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투자자금,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개발기금,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석유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의 해외조림사업자금과 같은 금융지원 제도가 실행중임.

3.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 법조인력의 국제화 및 해외고용 확대, 변호사직의 전문직화

국제적 역량을 갖춘 한국인 변호사를 양성해서 한국로펌과 해외현지 법률사무소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해외고용의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법률자문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향후 국제비즈니스 관련 법률자문을 외국로펌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뒤지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로펌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로펌 졸업생들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국내파 송무 변호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변호사와 글로벌 공익 변호사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국내 출신 변호사들의 국제화의 길이 열려야 한다. 2010년 로스쿨 중간평가 자료에 따르면²³⁾ 로스쿨 교육과정에 국제화와 특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외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는 매우 적다. 예외적으로 국내 로스쿨 제도에 속해 있지 않지만 미국 변호사 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대학원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경우 졸업생들의 미국 변호사 자격획득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신규변호사들이 송무외적 분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로스쿨의 교육 커리큘럼을 발전시켜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초기 3~4년을 해외에 진출해서 현장실무경험을 쌓는다면, 국제적 변호사로서 발돋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법무부와 코트라 는 해외에 진출한 로펌이나 코트라 해외현지사무소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인턴으로 보내서 현장경험을 축적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²⁴⁾. 해외 진출 한국로펌이나 무역관련기관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경우 이들이 향후 현지 법률사무소에 한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변호사직 전체에 관한 규제 완화에 있어서, 변호사 직의 본질을 관점사후보자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23) 2012년 8월 기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참조. 2012년 8월 현재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자체평가보고서가 공시된 전국 18개(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이주대, 연세대, 원광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참조함.

24) 법률저널, “법무부, 로스쿨출신 해외 인턴 선발” 2012. 4. 5일자

변호사를 본격적인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²⁵⁾. 모든 변호사는 자동으로 판검 사후보자가 된다는 인식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전문직으로서 변호사직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IV.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분석

이번 절에서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실현됨으로써 로펌의 해외진출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확대와 연계되어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경우 법률서비스 산업과 연관산업에서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법률서비스 산업에 빅뱅이 이뤄지기 전과 제Ⅲ장에서 제시한 법률서비스 빅뱅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일어날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현재 법률서비스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이뤄질 경우 법률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게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1. 해외직접투자와 법률서비스 연계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본 전망

먼저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해외투자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김종호 외(2011)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은 약 0.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 외(2011)의 실증분석결과를 적용하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2011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총액은 255.9억 달러였으므로 해외투자의 1/10~3/10 규모에 해당하는 25.6억 달러~76.8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해외수출이 증가할

25) 다른 관점에서는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으로부터도 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외투자확대로 인해 유발되는 국내수출은 평균적으로 25.6억 달러와 76.8억 달러의 중간값인 51.2억 달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2011년 원달러 환율 실적치인 1,108원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이 증가한 규모는 평균 5.7조 원이다.

다음으로 해외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 경우 수출증가로 인해 국내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법률서비스가 투입됨으로써 나타나는 법률서비스의 경제적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이용하여 해당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한 정도를 산정한다. 그리고 각 산업별로 산업연관표 상의 법률서비스 투입계수와 산업별 수출증가액을 곱하여 법률서비스 투입이 증가하는 정도를 구한다. 가령, 2011년에 제조업에서 해외투자는 79.5억 달러 증가하였고, 김종호 외(2011)의 연구결과인 해외투자 증가액에 대한 수출탄력성 추정치인 20%를 적용하면,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은 15.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7조 원이 된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해외투자확대로 인한 수출증대는 1.7조 원이므로 법률서비스의 투입계수인 0.057을 곱하면, 해외투자로 인해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때 법률서비스가 중간재로 사용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약 1,011억 원이 된다. 이와 같이 산출한 법률서비스 수출 증가액인 1,011억 원에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곱하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1,48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951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273명, 고용유발효과는 약 1,102명이 된다.

업종별로 살펴볼 경우, 제조업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로 인해 2011년에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약 1,273개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해외투자는 제조업 부문 다음으로 법률서비스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부문에서 법률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각각 874개, 592개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특히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도소매업 부문에서 기업의 해외투자와 연관될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2011년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증가로 인한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5.7조 원 증가한 것과 그 결과 법률

<표 8> 2011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법률서비스 연계 수출 및 일자리효과: 법률서비스 빅뱅효과 제외
(단위: 백만 달러, 백만 원, %, 명)

해외투자업종	해외직접투자 (달러)	수출유발효과 (달러)	원화	법률서비스 투입계수	해외투자-법률 서비스 연계 수출
제조업	7,945	1,589.0	1,760,612	0.057	101,063
광업	7,464	1,492.8	1,654,022	0.026	43,129
금융 및 보험업	3,429	685.8	759,866	0.091	69,3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88	437.6	484,861	0.076	36,869
도매 및 소매업	1,821	364.2	403,534	0.116	46,97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77	115.4	127,863	0.034	4,381
운수업	552	110.4	122,323	0.069	8,455
기타	1,618	323.6	358,549	0.056	20,253
합계	25,594	5,118.8	5,671,630		330,518

해외투자업종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의 경제적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제조업	148,552	95,090	1,273.4	1,101.6
광업	63,395	40,580	543.4	470.1
금융 및 보험업	102,004	65,294	874.4	75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194	34,690	464.6	401.9
도매 및 소매업	69,044	44,196	591.8	51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439	4,122	55.2	47.7
운수업	12,428	7,955	106.5	92.2
기타	29,769	19,056	255.2	220.8
합계	485,825	310,983	4,164.5	3,602.6

주: 2010년 생산자가격 통합대분류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해 유발효과를 산정함.

서비스 수출이 3,305억 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4,858억 원과 3,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된 법

률서비스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4,165명이며 고용유발효과는 3,6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⁶⁾.

2. 법률서비스 빅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이번 절에서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이뤄질 경우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인해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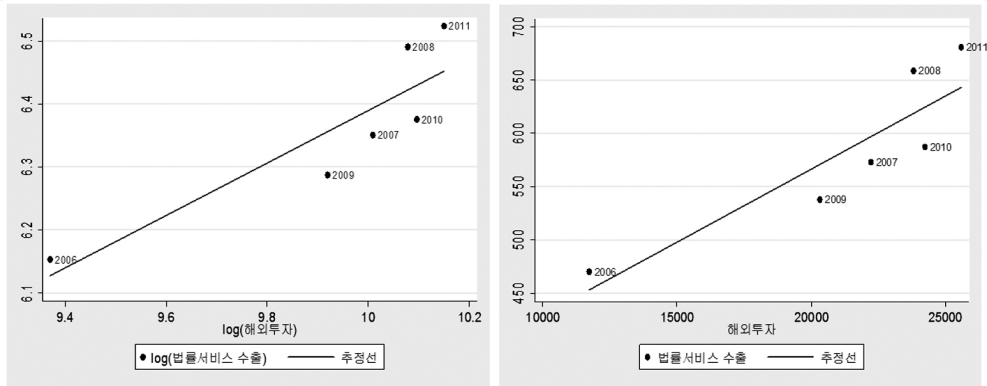
최근까지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률서비스는 수출증가율이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상태였다. 법률서비스 산업 빅뱅으로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가 밀접하게 연계될 경우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비율과 정비례해서 국내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빅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법률서비스 수출이 증가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6~2011년 해외투자증가율과 법률서비스 증가율 자료를 가지고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해외투자 증가율 단위당 법률서비스 수출증가율(법률서비스의 해외직접투자 탄성치)을 추정해본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투자가 1% 증가할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은 0.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 수출 증가율을 비교할 경우 2006년 이후 지난 5년간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 증가율 사이에 0.58%포인트의 격차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해외투자증가율이 1%에 증가할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0.42% 만큼 증가하는 반면 약 0.58% 만큼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대비 격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외투자 증가율과 법률서비스 증가율 간에 0.58%의 격차가 존재할 경우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법률서비스가 증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법률서비스 수출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특정한 수준에서 정체될 수도 있다.

26) 2010년 생산자가격 산업연관표 연장표에서 소분류기준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1.47, 부가가치유발계수 0.94, 취업유발계수 12.6명, 고용유발계수 10.9명을 이용함.

〈그림 1〉 2006-2011년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효과 탄력성 추정



주: 로그변환한 해외투자를 로그변환한 법률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log(\text{법률서비스 수출})$ 의 추정치= $-0.646 + 0.416^{**}\log(\text{해외투자})$.
 여기서, 관측치= 6, $R^2=0.784$ 이며 상수항과 $\log(\text{해외투자})$ 의 표준오차는 각각 1.840, 0.109임.
 $*** p<0.01, ** p<0.05, * p<0.1$
 자료: 법률서비스 수출은 KOSIS, 해외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 참조.

그러나 향후 법률서비스 산업에서 앞장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빅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외투자가 1% 늘어날 때 법률서비스의 증가율 역시 0.58% 포인트까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의 법률서비스 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수출증가율 격차를 만회할 정도로 법률서비스 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법률서비스 수출액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서비스 산업 빅뱅이 성공할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은 현재의 증가율인 0.42%에 더해져 추가적으로 0.58% 포인트만큼 더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의 평균 증가율은 28.3%였으므로 법률서비스 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정도는 16.41% 포인트 ($=28.3 \times 0.58\%$)이다. 다시 말해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 수출이 현재 증가율에서 연평균 16.41% 포인트만큼 더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이다.²⁷⁾

다음으로 2012년 법률서비스 수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5년 이동평균산정법을 적용한다²⁸⁾. 법률서비스 수출 증가율의 과거 5년 평균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해서 전망하고자 하는

27)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8.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법률서비스 수출은 2006~2011년 사이 실제로 연평균 8.7% 증가하였다.

해당연도 법률서비스 수출액을 구한다. 그리고 동년도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증가액을 구한다. 이때 법률서비스 수출액을 기준으로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격차를 감안하여 법률서비스 빅뱅으로 인한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증가효과를 추정한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법률서비스 빅뱅 이전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2007~2011년 사이 법률서비스 수출 이동평균 증가율인 8.7%를 2011년 법률서비스 수출액 6.8억 달러와 곱하여 구한다. 이렇게 구한 법률서비스 빅뱅효과를 제외한 법률서비스의 수출액 7.4억 달러에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수출증가율 격차인 16.41%를 곱하면 법률서비스 빅뱅을 통해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를 밀접하게 연계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부문의 추가적인 수출증가액은 1.2억 달러가 된다. 따라서 2012년 법률서비스 총수출액은 법률서비스 빅뱅 제외 법률서비스 수출액인 7.4억 달러와 법률서비스 빅뱅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수출증가액인 1.2억 달러의 합인 8.6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한 2012년 법률서비스 빅뱅을 통한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증가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면 법률서비스 빅뱅의 수출 증가액이 1.2억 달러 즉 원화기준 1,346억 원 증가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97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267억 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1,696명, 고용유발효과는 1,468명이 된다. 요약하면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으로 인해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이 최대한 확대될 경우 법률서비스 빅뱅이전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비교하여 2012년 법률서비스 산업부문에서 약 1,696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법률서비스 산업 빅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 증가액에 근거해서 추정해보았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간 2012~2016년까지 법률서비스 빅뱅의 수출증가효과는 총 1조 82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서 법률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2012~2016년까지 해외투자-법률서비스 연계수출이 총 1조 829억 원 추가적으로 늘어날

28) 법률서비스 수출은 시계열 자료로서 단기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기경기순환 패턴을 따라서 변화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7~2011년 사이 5년을 기준으로 평균산정기간을 매년 조정하는 이동평균산정법(Moving Average)을 사용하여 법률서비스 수출의 장기전망치를 추정한다. 가령, 2012년 수출액 증가율은 2007~2011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2013년의 경우는 2008~2012년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동평균 기간을 매년 조정하여서 미래 법률서비스 수출액을 추정한다. 이동평균산정법을 사용함으로써 단기간 경기 변동요인에 대해 유연하게하고(Smoothing Out) 장기추세 및 경기순환패턴을 반영하고자 한다.

〈표 9〉 법률서비스 빅뱅의 경제적효과: 해외투자-연계-법률서비스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억 원, 명)

법률서비스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누계	2017	2018	2019	2020	장기 누계
법률서비스 총수출액(달러)	861.8	1,064.5	1,292.7	1,638.2	2,074.6	6,931.8	2,592.8	3,232.2	4,036.6	5,069.1	21,862.5
수출증가율	8.7%	6.1%	4.3%	8.9%	8.8%	7.4%	7.4%	7.1%	7.3%	7.9%	7.4%
법률서비스 빅뱅 제외 법률서비스 수출액(달러)	740.3	914.4	1,110.4	1,407.2	1,782.1	5,954.4	2,227.2	2,776.4	3,467.5	4,354.4	18,779.9
법률서비스 빅뱅의 수출증가효과 (달러)	121.5	150.1	182.3	231.0	292.5	977.4	365.6	455.7	569.1	714.7	3,082.5
원화기준	1,346.3	1,663.0	2,019.5	2,559.3	3,241.0	10,829.1	4,050.6	5,049.4	6,306.2	7,919.2	34,154.5
생산유발효과	1,979.0	2,444.4	2,968.5	3,761.8	4,763.9	15,917.6	5,953.9	7,422.1	9,269.4	11,640.3	50,203.3
부가가치 유발효과	1,266.8	1,564.7	1,900.2	2,408.0	3,049.5	10,189.2	3,811.2	4,751.0	5,933.4	7,451.1	32,135.9
취업유발효과	1,696	2,095	2,545	3,225	4,084	13,645	5,104	6,362	7,946	9,978	43,035
고용유발효과	1,468	1,813	2,201	2,790	3,533	11,804	4,415	5,504	6,874	8,632	37,228

주: 수출증가율은 2007년에서부터 5년 간격 이동평균임. 법률서비스 총수출액은 법률서비스 빅뱅 제외 법률서비스 수출액과 법률서비스 빅뱅의 수출증가효과의 합. 2010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의 통합소분류 168개부문 중 사업관련전문서비스의 생산(국산)유발계수(1.47) 및 부가가치유발계수(0.94)와 산업별 취업(12.6) 및 고용유발계수(10.9)를 이용함.

경우 법률서비스 빅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총 13,645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서비스 빅뱅의 장기 경제적 효과를 전망해 본 결과 2012~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수출증가액은 약 3조 4,155억 원이 된다. 또한 생산유발효과는 5조 20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 2,136억 원이 이르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43,035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산업 빅뱅을 통한 수출확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시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수출보험·금융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고 변호사의 해외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법률서비스산업의 빅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한국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더불어 한국 로펌이 국내로 진입하는 외국기업과 해외현지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경우 신규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개혁이 실현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로펌수준의 경영전략과 산업수준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실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산업 빅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에서 2011년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이 실현될 경우 장단기에 걸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분석한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의 강한 정책실행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로펌의 해외진출 시 중소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해외현지법률사무소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들은 정책당국의 강한 실행의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증대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 교육서비스 산업, 콘텐츠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규가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무규제 지역을 설립하여 법률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콘텐츠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융합해야 한다. 한편 무규제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기업에게 국내로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무규제지역에 지식기반서비스 융합수출진흥센터를 설립하여 법률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콘텐츠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해외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본 논문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로펌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에 기반하여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 및 제도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외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가져오는가를 이론화하여 실증분석모형안에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향후 관련자료의 확보와 더불어 연구되어야 할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2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2012. 7. 2.
- 김갑유,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한국 로펌의 생존 전략」,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2007.
- 김두얼·이시욱, 「법률분야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방안」, 『법경제학연구』 제7권 제2호, 2010, pp.183-222.
- 김종호·김유신·한경목·이재우·하병기·조진환,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 김진원, 『김앤장이야기』, 마고북스, 2012.
- 기획재정부,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
- 매일경제, 「글로벌 100대 로펌은 변호사 평균 1,000명…매출 8억 달러」, 2012. 7. 17.
- 매일경제, 「연기금 ‘대체투자 60조로 확대’…KIC ‘자산 30% 해외자원 투자」, 2012. 9. 25.
- 법률저널, 「법무부, 로스쿨출신 해외 인턴 선발」, 2012. 4. 5.
- 이국윤,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고슴도치와 여우-법률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재구성에 대한 단상」,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2007.
- 인베스트조선, 「김앤장, 작년 3000억 벌었다...1인당 생산성 ‘울촌’ 최고」, 2012. 3. 12.
- 전국 18개 대학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12.
- 중앙일보, 「로스쿨 1기 어디 취직했나 보니」, 2012. 9. 14.
- 중앙일보, 「법무부, 중국서 국내로펌 합동 해외 홍보설명회 개최」, 2012. 5. 9.
- 지식경제부, 『지경부,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한다』, 2011. 4. 6.
- 최남석, 「한·미 FTA 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KERI column』, 한국경제연구원, 2012. 4. 23.
-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팀, 『2011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12. 3.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2 No.1 June 2013

The Economic Impact of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n Analysis of Legal Service Export Promotion

Namsuk Choi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ffect value-added and job creation in the Korean economy. Using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export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FDI data during the period 2006-2011, this paper finds that Korean legal services exports cumulatively increase 3.4 trillion won by the year 2020, and they create 3.2 trillion won value-added and 43 thousand jobs as a result of Korean legal service reforms. The following tasks across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done to reform significantly legal service industry. First, domestic law firms must improve its global competitiveness by specialization, organization, and sizing-up of the law firms. Second, partnership between lawyers and law-related licensed professionals should be permitted when law firms decide to open foreign affiliates, and legal service export supports such as insurance and finance need to be increased. Third, by shifting the paradigm on domestic legal services, large law firms' access to foreign legal markets, educating internationally-focused lawyers, and foreign employment of lawyers must be driven forward more aggressively.

Key words: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Regulatory Reform, Job Creation, Export Promotion, FDI

